

서산테크노벨리 A3a블록 우미린 임차인 모집공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및 홍보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발열, 기침, 설사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관람, 청약 접수, 공급계약 체결일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분양홍보관 관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약제 방문을 원칙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임차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8년)입니다.
-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여부,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 신청자 중 서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신청불가)만 공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분양홍보관 관람은 2022.05.20.(금)부터 가능하며, 개관 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 입니다.(오픈 및 폐관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모집 승인 대상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며, 당첨자 추천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59.9050㎡형은 세대별 61,600,000원, 59.6243㎡형은 세대별 61,300,000원, 59.5822㎡형은 세대별 61,300,000원, 79.1101㎡형은 세대별 85,3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됩니다.
- 전용 59.9050㎡, 전용 59.6243㎡, 전용 59.5822㎡는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우리은행, 34,172,400,000원)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전용 79.1101㎡는 해당 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우리은행, 9,007,680,000원)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보증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 납부방법 등)에서 규정한 비율로 분담한다. 상기 임대보증금은 준공후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담주체 : 사업자 75%, 임차인 25% (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이 공고문은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sst.lynn.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12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청 주택과-18381로 임차인 공급 신고
-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081(서산테크노밸리 A3a블럭)
-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24층 6개동 총5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대상

구 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세대별 대지지분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소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59A	317	59.9050	19.7004	79.6054	30.6086	110.2140	45.1177	2022년 10월	
	59B	80	59.6243	20.6775	80.3018	30.4653	110.7671	44.9063		
	59C	66	59.5822	20.7994	80.3816	30.4438	110.8254	44.8746		
	79	88	79.1101	25.1265	104.2366	40.4219	144.6585	59.5821		

- 2016.11.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설계변경 및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권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등기는 별도로 이행합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 공고상 전용면적 주택형 표기 안내

공고상 전용면적(㎡)	59.9050	59.6243	59.5822	79.1101
주택형 표기 방식	59A	59B	59C	79

II 임대보증금 내역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층별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임대료
				계약시	2022.07.05	입주지정일	
59A	1~2층	26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35,000
	3층 이상	291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50,000
59B	1~2층	7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35,000
	3층 이상	73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50,000
59C	1~2층	6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35,000
	3층 이상	60	130,000,000	7,000,000	7,000,000	116,000,000	150,000
79	1~2층	10	140,000,000	8,000,000	8,000,000	124,000,000	210,000
	3층 이상	78	140,000,000	8,000,000	8,000,000	124,000,000	233,000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개시후 재계약(2년 경과시) 또는 1년이 경과된 후 신규계약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 등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Ⅲ 일반공급 청약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형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시(청약 신청분) 각 주택형별 배정물량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청약 당첨자(서산시)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서산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이 주택 계약 시 임차인과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임차인 선정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주택형	신청일시	신청장소	비고
일반공급	2022.05.25.(수) 10:00 ~ 2022.05.27.(금) 17:00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sst.lynn.co.kr)	

※ 본인인증이 완료된 1인 1건 청약신청만 유효하며, 본인인증 불가시 청약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청약 안내

구분	청약신청 절차안내
이용방법 및 절차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접속 (sst.lynn.co.kr) → 청약신청 → 본인인증 → 청약신청자의 인적사항 입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청약완료
청약접수 확인방법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접속 (sst.lynn.co.kr) → 청약신청 → 본인인증 → 청약접수현황

■ 유의사항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 등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착오(중복청약 등)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또는 부동산(계약하신 동·호수)을 담보로 전세권, 저당권,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IV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신청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1인당 1건 청약을 원칙으로 1인당 2건 이상 중복청약 할 경우 청약자격 및 당첨사실은 무효처리 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안내

구분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발표	계약 체결
일반공급	2022.05.31.(화) 10:00 이후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sst.lynn.co.kr)	일시 : 2022.06.02.(목) ~ 2022.06.08.(수), 7일간 / 10:00~17:00 장소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분양홍보관 ☎ 041)663-1300

- 당첨자 추첨 및 발표 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는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수 배정은 전산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상기 정당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임대인이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VI 계약체결 등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352215	코리아신탁(주)	* 입금예시 105동501호 흥길동 -> 5-501 흥길동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후 임대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은 임차인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 당사 분양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임차인(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임대보증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되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임대료 금액과 함께 매월 1회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 계약체결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주요사항 안내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수입금”이라 한다)은 지정된 임대수입금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 납부금액은 무효가 됩니다.
2. 임대인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사업체가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코리아신탁(주)는 임대수입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뿐,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금 총액을 코리아신탁(주)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이를 위해 임대수입금을 코리아신탁(주)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코리아신탁(주)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6. 임차인은 코리아신탁(주)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임대수입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임대수입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이행합니다.
7. 임대수입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코리아신탁(주)에게 임대수입금 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적 용
본인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주민등록표 초본 1통(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1년 포함) ※ 우선공급자에 한함 • 임대계약금 입금증(지정계좌 납부 무통장입금표) • 임대차계약서(당사 홍보관 비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제출 •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 임차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양식은 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5.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 발급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Ⅶ 기타사항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 임차인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잔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전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이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임대료, 연체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VIII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카달로그 등 홍보물,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 및 분양홍보를 위해 3세대(101동 204호, 101동 205호, 101동 301호)는 사업주체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체결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일조, 진입로, 주요도로,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산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임대관리 업체를 통한 관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임차인은 임대관리 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세대 내 자연환기 필터 포함)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1)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분양홍보관에 표현된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입구는 북동측(101동과 102동사이) 및 북서측(101동과 106동사이)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동측 출입구와 인접하여 단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용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호라인, 103동의 엘리베이터 내부규격은 가로 1.8m X 세로 1.45m X 높이 2.45m 이며, 그 외 엘리베이터 규격은 가로 1.6m X 세로 1.45m X 높이 2.45m입니다.(내부 핸드레일을 제외한 규격입니다. 내부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
-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층 및 1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냄새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전층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공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실제 시공시 디자인 및 시설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등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내부통행로 높이는 2.3m로 설계되었으며, 이외구간(차량주차구간 등)은 부분별로 높이가 상이합니다. 이로 인하여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상으로 운행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4개소(급속 1개, 완속 3개) 설치되며, 사용시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 주차장과 지상주차공간으로 구성되며,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은 임대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A/S센터는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어린이문고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문고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4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조적 마감과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6) 학교 및 어린이집

- 초등학생은 성연초등학교, 중학생은 성연중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나, 학교수용계획은 향후 사업계획(개발 및 입주시기, 위치, 평형, 세대수 등) 및 학생배치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학생배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041-660-0305)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서산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서산시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단위세대

1) 공통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분양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탑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벽,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마감이 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세대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1~3층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며, 일반 철재문으로 설치됩니다.]
- 소방법에 의거 3~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실외기실은 외부 노출형으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창호형 자연환기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

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각 1개소 매립 설치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 도어는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방 렌지후드 내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주택형별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 법적 허용 내 시공오차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에 구현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부위별 마감재 사양, 색상, 재질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551세대 전세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발코니 확장부위는 설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비확장 또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22mm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발코니1) 내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단창, 외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주방발코니(발코니2) 외측은 22mm복층유리 단창, 내측은 ABS합성수지 여닫이문이 설치예정입니다.(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발코니측에 위치한 대피공간에는 소방피난이동공간으로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피난동선의 방해가 되는 적재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 분양홍보물 관련(홈페이지, 인쇄물 등)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내 59A, 59B, 79 주택형의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내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영상물 등은 당사에서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

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미구현세대의 경우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분양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문고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세대 내 인테리어 사진은 샘플하우스를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관련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합니다.
- 임차인은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5612022-704-0150000호	₩ 7,890,000,000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터로 함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p> <p>【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p>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임차인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임대인)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임대인)	(주)청진건설	472-87-00036
시공회사	우미건설(주)	409-81-31276
	(주)다안건설	143-81-31852

▣ 분양홍보관 위치 :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6-1번지, 2층

▣ 서산테크노밸리 우미린 홈페이지 : sst.lynn.co.kr

▣ 임대문의 : ☎ 041)663-1300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 및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미기재사항은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